

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

- 위촉직 청년위원 모집 안내 -

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을 모집합니다. 환경교육 분야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< 청년위원 모집 개요 >

- **[대상·자격]**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청년위원(만 19세 ~ 34세) 3명
 - 환경교육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환경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
- **[활동기간]** 위촉일로부터 3년(연임 1회 가능)
- **[활동내용]** 환경교육위원회 안건 논의·검토 등 심의 참여
- **[모집기간]** '26. 10. 19(월) 09시 ~ 10. 30(금) 18시
- **[지원방법]** 청년인재 DB 시스템을 통한 신청(www.2030db.go.kr), 지원서는 프로필 등록 시에 '자기소개'란에 파일첨부로 제출 (증빙서류는 요청 시 별도 제출)
※ "청년인재 DB" 회원가입 → 프로필 등록 → 청년을 찾습니다 → 환경교육위원회 청년위원 모집 공고 → 신청
- **[문의처]**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(T. 044-201-6535)
- **[참고사항]**
 - 병역의무이행자는 복무기간별 청년연령 상한을 1~3세 연장하여 인정
 - *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 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. 군복무기간 1년미만: 1세, 1년이상~2년미만: 2세, 2년이상: 3세 연장
 - 기존 위원들의 연임 여부에 따라 위촉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 - 후보자 선정을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음
 -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(~12월)
 -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해촉할 수 있음

참고

환경교육위원회 설명자료

□ 위원회 개요

- (목적) 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·운영
(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)
- (구성) 공동위원장(기후부차관 포함) 포함 20 이내(위원장 1, 당연직 8, 위촉직 11)
 - * (당연직 정부위원) 교육부, 국방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성평등부, 해수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(위촉직 민간위원)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기후부장관 위촉)
- (기능) 국가계획의 수립,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,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,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,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,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

1. 국가계획의 수립
2.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
3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5.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
6.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
7.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위원회 민간위원

- (자격) 환경교육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(위촉 기간) 3년, 연임 1회 가능